



환경부



수신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및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 「건설폐기물법」 준수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은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며,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 등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최근,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발주 시 건설폐기물처리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처리비용을 시공사 등에 전가한다는 언론보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순환골재 의무 사용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해당 공사 발주 시 건설폐기물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 발주 >

- 근거 : 건설폐기물법 제15조
- 대상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붙임 참조)
- 대상공사 : (의무)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
- (권장) 100톤 미만의 공사도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가급적 분리발주
- 발생량 산출 : 철거(해체) 대상 구조물의 실측, 설계도서 등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을 가급적 정확하게 산출(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포함)
- 처리비용 : 산출된 발생량에 한국건설자원협회의 최근년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추가 발생량에 대해서도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

- 근거 :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38조
- 의무사용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일정 구조·규모의 건설공사(붙임 참조)
- 의무사용량 : 대상공사의 골재 소요량의 40%이상

4. 아울러, 상기 내용을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 건설폐기물의 분리발주 및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이 되는 2차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및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기관 1부.
2. 건설폐기물 처리 단가 1부.
3. 순환골재 의무사용 관련 자료 1부.

